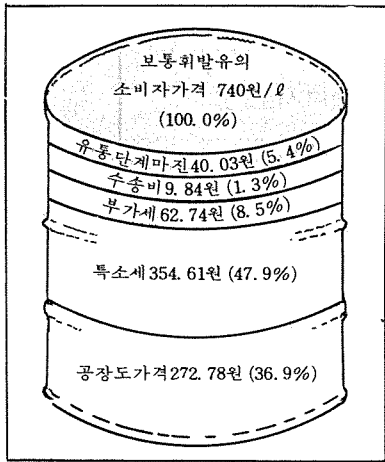




揮発油 特消費税の 引下



揮発油는 高率의 特消費税 부과로 産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 감퇴의 主因이 되고 있다.

죽음과 税金처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있다. 또 무거운 税金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税金은 自由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이라는 肯定論도 있다.

우리에게 近代의 意味에서의 税金의 歷史가 없다. 근대적 의미의 税金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定着되어 왔고 税金은 권력의 역사만큼 오랜 것이다. 그러나 近代國家 또는 민주주의는 권력에 의한 일반적인 租稅 부과를 거부하고 제한한 데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英國의 경우 청교도혁명의 배경에는 船稅에 대한 불만, 생활필수품에 무차별적으로 税金을 부과하는 압제적인 王制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美國獨立의 봉화가 된 1773年 12月の 보스톤 티 파티事件은 본국인 英國議會가 식민지인 美國에서 뽑은 議員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税金만 부과해온데 대한 투쟁이었다. 프랑스 革命의 원인중에도 귀족들에 대한 면세특권이 부르주아의 큰 불만이 되어 왔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税金을 놓고 絶對王政과 피를 흘려싸운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오늘 날 税金에 대한 意識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압제적인 王과 싸워 이겨 근대적 민주국가 건설한 국민들은 새 國家를 자신의 국가라고 인식, 이 국가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美國이나 英國에서도 税金이 무겁다는 소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그러나 税金이 무겁다고 말하는 美國, 英國사람은 그 말끝에 다음 번 選舉에서는 X X黨에 투표해서 세금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税金을 보다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다고 말을 꼭 덧붙인다고 한다.

税金내는 사람을 우리 말로는 納稅者라고 하고, 英語로는 Taxpayer라고 한다. 「納」자에는 물건을 넣고 담는다는 뜻도 있으나 위에 바친다는 뜻도 있다. 공납, 상납, 입납 등 「納」자의 뜻엔 바친다는 의미가 사실은 강하다. 반면 Pay에는 지불한다는 뜻밖에 없다. 무엇

인가를 받고 그 代價를 지불하는 것이 Pay인 것이다. 英美에서는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代價로 稅金을 지불하는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稅金은 아직도 바치는 것이다.

租稅의 부담은 공평해야 한다고 흔히 말해진다. 최근엔 公正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공평은 무엇이며, 公正은 무엇인가. 공평은 量的인 비교이며, 公正은 그것을 포용하는 도덕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평은 公正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된다.

그 동안 石油業界와 정부사이에서 論難의 대상이 되어 왔던 石油製品의 特別消費稅率이 일부 조종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揮發油의 特消稅率을 현행 1백60% (彈力稅率 1백30%)에서 1백%로 引下하고 그 대신 프로판, 부탄등 가스에 대해 새로 10%의 特消稅를 부과하기로 했다.

揮發油에 대한 稅率이 인하됨으로써 揮發油價格이 세계에서 높은 나라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揮發油價格이 다소 낮아짐으로써 揮發油수요증대와 자동차의 국내수요촉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揮發油는 高率의 特消稅부과로 産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감퇴의 主因이 되고 있다. 게다가 石油類에 대한 세율은 대부분의 外國의 例와는 달리 從價稅制이기 때문에 油價가 引上될 때마다 油價引上率만큼 稅額이 자동적으로 증가되므로 소비자부담을 가중시켰으며, 특정제품에 과중한 稅金을 편중부과함으로써 제품간 가격구조의 乖離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油種間의 심한 稅率차이와 價格體系의 乖離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揮發油부문의 特消稅率 引下시기를 내년 油價조정시기부터 적용키로 한 것은 行政편의주의의 인상을 풍기고 있다.

特消稅는 附加價值稅가 單一稅率로 운용됨에 따른 稅金부담의 所得逆進性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

이라고 한다. 즉 高所得層이 소비하는 財貨나 用役에 特消稅를 부과함으로써 저소득층의 稅金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해 租稅부담율의 衡平을 기하도록 했다는 것이 稅制當局의 얘기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租稅收入의 확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81년의 경우 特消稅 징수액은 목표보다 미달했지만, 6천6백52억원에 달해 內國稅收入의 14.5%, 全體歲入의 8.1%를 차지했다. 이 중 揮發油에서 거둔 것이 2천9백1억원으로 전체 特消稅 징수액의 43.6%에 달했다. 揮發油에서 거둔는 稅金이 얼마나 재정운용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재정운용의 측면에서 그만큼 揮發油에 대한 稅率을 낮추거나 特消稅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올해 特消稅 징수목표는 예산기준 8천6백11억원으로 작년 징수실적보다 29.4% 늘어난 규모다. 揮發油에 대한 特消稅 징수액이 같은 비율로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하면, 3천7백50여억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政策은 「脫石油」이면서 財政은 「石油依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石油産業에 큰 重圧이 되고 있다.

石油産業의 입장에서 보면, 揮發油에 대한 과도한 特消稅부과는 揮發油소비감퇴를 초래함으로써 全體石油需給구조에 乖離를 가져 온다. 현재 정부가 올해 特消稅收入이 당초 계획보다 8.2% 감소할 것으로 보는 이유도 稅源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揮發油의 소비감소 때문이다.

租稅의 景氣조절기능 내지 産業政策의인 誘引機能을 감안할 때, 揮發油特消稅率인하는 비록 한계성을 보이기는 했으나, 적절한 조치로 풀이되며, 이번에 새로 과세대상품목으로 추가된 가스類에 대한 課稅 역시 租稅형편상, 그리고 稅收측면에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金乾洽·大韓石油協會 弘報室長〉